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이 일정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0758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협의 대상 도로의 부속물을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도로표지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7. 3. ~ 7.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4호”를 “법 제30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중앙분리대
2. 과속방지시설
3. 도로표지
4. 낙석방지시설
5. 미끄럼방지시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연계하여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제100조제3항제2호 중 “법 제30조”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설치·운영”을 “설치·운영 및 사전 협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법 제3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 ----- -----.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u>중앙분리대</u> 2. <u>과속방지시설</u> 3. <u>도로표지</u> 4. <u>낙석방지시설</u> 5. <u>미끄럼방지시설</u>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연계하여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제100조(권한의 위임) ① ·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2호의	제100조(권한의 위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 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2. <u>법 제30조에 따른 도로구역</u> 내 시설의 <u>설치·운영</u> 3. ~ 42. (생략) ④ ~ ⑥ (생략)	----- ----- -----.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u>--- ----- <u>설치·운영 및 사전</u> <u>협의</u> 3. ~ 4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3922